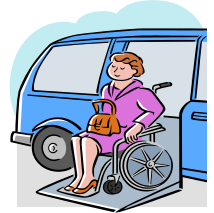


**▶ 장애인 전용 차량(AAR)이란 무엇인가?**

AAR 이란 뉴욕 시 교통국(NYCT)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“보조 교통 수단”으로써의 차량 서비스를 말한다. 장애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뉴욕 시의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.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률 조항(ADA)에 따르면, (지하철이나 버스처럼) “정해진 구간”만을 운행하는 시 당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“보조 교통 수단”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 뉴욕 시의 모든 5개 보로뿐만 아니라 웨체스터 카운티와 닷스 카운티 부분 지역에서 AAR 은 일주일 7일 내내 24 시간 동안 운행한다. 장애 정도에 따라, 어떤 경우에는 집 앞까지 운행해 주며, 다른 경우에는 “feeder 서비스 (장애인이 사는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만 장애인을 데려다 주는 운행 서비스)” 를 제공한다.



편도 이용에 필요한 요금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반 요금과 동일하다. (요금은 정확한 잔돈을 준비하여 지불해야 한다). Feeder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같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AAR 과 버스를 둘다 이용했어도, 두번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, 대신 AAR 이나 버스 요금중 하나만 선택하여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.

누가 AAR 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떻게 자격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, 장애인 차량 이용 신청서란 제목의 NYLI 설명서를 참고 하여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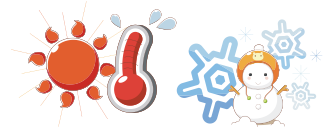
**▶ 어떤 경우에만 AAR 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용 목적에 제한이 있나?**

아니다.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, 장애인이라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도 AAR 을 이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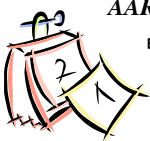
**참고 :**

단순히 병원에 다닐 목적으로 AAR 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.  
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.

**제한적인 자격 조건과 Feeder 서비스 :** 단순히 어느 목적지에 가고 싶다면 AAR 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지만, “제한적인 자격 조건”을 내세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. 예를 들면,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특정한 날씨나 거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거나, 특정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 하는데 탈 수가 없는 지역 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한다. 이런 제한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“feeder 서비스 (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)”를 이용할 수 있다.



**▶ 어떻게 AAR 를 이용할 수 있나?**



**AAR 을 이용하기 위해 :** “AAR 예약 부서 (877-337-2017, 2 번 선택)” 에 이용하고 싶은 날 1-2 일 전에 전화 하여야 하며;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AAR 차량을 길거리에서 불러 세워 탈 수는 없다.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,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꼴로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, 예를 들면,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러 간다면 AAR 에 따로 매번 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, 이런 경우에는 “가입 이용 서비스”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.

약속된 시간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량이 도착한 후 단지 5분간만 기다리도록 한 규정이 AAR 에 있기 때문에,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장애인 이용객이 도착하지 않으면 AAR 은 그냥 떠나가 버리며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을 “no show (나타나지 않았음)” 으로 기록한다. 그러나, 약속 시간이 지나 30분 이내에 AAR 이 도착 하였다면, 이런 경우에는 “on time (정시 도착)” 이라고 간주 한다.

**AAR 이용을 취소할 경우 :** 만일 취소하고 싶은 경우, 적어도 3시간 전에 AAR 에 전화 하여야 한다. 만일 늦게 (“late-cancel”) 취소 하였다면 AAR 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간주 한다. 한달안에 몇차례 취소 하였다면, A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. (아래 참조). 당일 날 취소할 경우, 877-337-2017 (5 번 선택) 에 전화 하여 “AAR Transit Control (배차 관리 부서)” 에게 알려야 한다. 미리 취소할 경우에는 AAR 예약 센터 (2 번 선택)에 전화해야 한다.



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.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.



**차량이 늦게 도착할 경우:** 만일 AAR 이 약속 시간보다 30 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, AAR Transit Control (배차 관리 부서)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. 만일 본인이 타고 갈 차량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AR 에서 알게되면 다른 차량을 대신 보내 주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.

만일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게 되면 이용한 그 차량에 요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며 나중에 3 개월 이내에 서신으로 AAR 에 지불한 금액을 요구하여 환불 받을 수가 있다. 환불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를 자세히 기록하여 보내야 한다. 어떤 경우 예외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-예를들면, 만일 다른 교통 편의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때문이라고 AAR 에서 결정하면, 그 지불한 요금을 환불 받을 수가 없다.



**▶ 차량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승할 수가 있나?**

한 사람의 손님 이나/혹은 돌보아 주는 사람 (PCA) 을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AAR 에서는 허락해야 한다.: 예약을 할때 AAR 에게 알리면 충분한 자리 배석을 해준다. 만일 손님이 함께 동승했을 경우, 그 손님은 따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. 그러나, PCA 가 함께 동승했다면, 이는 본인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. PCA 를 함께 동승하기 위해서는 AAR 카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 손님 한사람이나 PCA 한사람외에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면, 차량에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했던 목적지 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AAR 에서 허락해 준다.

**참고 :** 본인에게 PCA 와 함께 오라고 AAR 에서는 요구할 수 없으나,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PCA 를 데리고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.

**▶ AAR 차량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?**



**혼자 타고 갈 경우:** 차량에 가고 오는데, 타고 내리는데, 혹은 40 파운드 이하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2 개 까지 가지고 갈 경우, 장애인인 이용객이 차량으로 부터 100 피트 거리안에 있거나 차량을 볼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AAR 기사 는 도와줄 수가 있다. 차량 운전 기사 는 건물안에 들어가지 않는다.



**PCA 와 함께 타고 갈 경우:** 운전 기사 는 차에 올라 타는 것과 휠체어/스쿠터/안전 벨트를 단단히 하도록 도와줄 뿐이다.

**▶ 만일 AAR 에서 필요로하는 차량 이용을 중지 한다면?**

차량 이용 예약을 많이 취소한 경우 AAR 은 차량 이용을 중지 시킬 수가 있다. 주어진 몇 개월간 적어도 일곱(7)번을 예약하였으나 그들 중 30%가 “no-show” 혹은 “late-cancel” 인 경우에 해당된다. 한달안에 7 번 이상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. “subscription service (가입 이용 서비스)”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중지한다.

만일 AAR 에서 차량 이용 서비스를 중지 시켰다면, 서신을 통하여 본인에게 이용 서비스가 중지되었고 규정을 위반한 기록을 나열하고 그리고 이에대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며 알려줘야 한다. 청원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, AAR 에서 거론한 규정 위반이 왜 잘못되었고 왜 서비스를 중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여 청원할 수가 있다. 이러한 청원에 관련하여 도와줄 수있는 증인이 있다면 공청회에서 증언할 수 있거나 서면을 통하여 진술할 수가 있다. 만일 청원할 경우,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하여 AAA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**이용 중지 에 대한 청원:**  
 서신으로 청원 신청을 요구할 경우, 이용이 중지됐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 14 일 이내에 수신자 “Notice of Intention to Appeal Suspension” 이라고 적고, 청원을 요구하는 진술서 양식이나/서신을 함께 보낸다.  
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, 통지서를 받은 날 14 일 이내에 수신자 “Notice of Intention to Appeal Suspension” 이라고 적어서 전달 한다. 그러면 AAR 은 공청회 개최 날짜를 잡아준다.

**▶ AAR 에 관한 정책과 규정에 대하여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?**

<http://www.mta.info/nyct/paratran/guide.htm> 에서 “AAR 서비스에 대한 안내”를 찾아 볼수 있다.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, 877-337-2017 (1 번 선택) 에 전화하여 AAR 자격 심사 부서에 요구하여야.

<http://www.mta.info/nyct/paratran/onthemove.htm> 에서 “On the Move” 라고 부르는 소식란을 찾아볼 수가 있다. 오디오나 안내문 혹은 소식란의 Braille 개정판이 필요한 경우, 718-393-4133 으로 전화 하여라.



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.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.

**▶ 만일 영어에 대한 언어 장벽이 있거나 다른 형식의 AAR 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?**


**참고 :** AAR 을 이용하는 데 미 시민권자일 필요가 없으며, 체류 신분에 관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.

AAR 에서는 필요할 경우 자격 조건이나 청원 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내용/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. 만일 영어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 번역된 자료나/통역사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. 예를들면, 이용 서비스를 중지하여 이와 관련된 공청회에서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AAR 에서는 통역사를 고용하여 도와주어야 한다. 본인에게 통역사를 데리고 오라고 AAR 에서는 요구할 수 없으나, 만일 좋다면 본인 스스로 통역사를 데리고 갈 수가 있다. AAR 에서는 예를들어, 언제 차량이 필요한지 예약하려고 AAR 과 전화 통화할 때 통역사를 대기시켜 그에따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만일 AAR 에서 통역사/번역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한다면, 이러한 문제를 역점에두어 해결해 주고 있는 NYLPI (212-244-4664) 에 전화 하여라.

**▶ AAR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?**

소송 성격에 따라 이런 소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.

<p><b>뉴욕 시 교통 차량국 ("NYCT")</b></p>	<p>운전 기사가 불손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등 AAR 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한다면 NYCT 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전화</u> : 511 로 전화하여 MTA 뉴욕 시 교통 차량국의 고객 지원실에 보고하거나</li> <li>• <u>서신을 보낸다</u> : MTA New York City Transit , Paratransit Division, Customer Relations, 130 Livingston Street, Brooklyn, NY 11201</li> <li>• <u>이메일</u> : <a href="http://www.mta.info">www.mta.info</a> 를 찾아 <u>Contact Us</u> 를 클릭한다.</li> </ul>
<p><b>연방 교통 차량 행정국 ("FTA")</b> <b>인권 사무실 ("OCR")</b></p>	<p><b>AAR 서비스의 문제점들 :</b></p> <p>ADA 그리고 1973 년에 제정된 복권 조항과 관련된 504 항에 따라 관련 업체가 규정을 위반 하였던 지를 FTA 에서 조사한다. FTA 에서는 소송한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지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. : 단지 AAR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련 업체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.</p> <p>어떻게 소송을 하는 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: <a href="http://www.fta.dot.gov/civilrights/ada/civilrights3889.html">http://www.fta.dot.gov/civilrights/ada/civilrights3889.html</a> 를 참고 해라</p> <p><b>인종,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:</b></p> <p>1964 년에 제정된 인권법 Title VI 에 따라 인종,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국가 (영어에 대한 언어 장벽도 포함하여) 때문에 차별 당했는 지를 FTA 에서 조사한다. 어떻게 소송하는 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: <a href="http://www.fta.dot.gov/civilrights/ada/civilrights3889.html">http://www.fta.dot.gov/civilrights/ada/civilrights3889.html</a> 를 참고 해라</p> <p>주의 : FTA 에 소송을 접수 시킬 수 있는 마감 시간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지 18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</p>
<p><b>법정 소송</b></p>	<p>모든 법적인 소송은 문제점이 발생한 뒤 주어진 시간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거나 그리고/혹은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해야 한다.</p>

<p><b>질문이 있다면?</b></p> 	<p><b>NYLPI 에 (212) 244- 4664 (일반 통화) 나 (212) 244-3692 (청각 장애자를 위한) 에 전화 하여라.</b></p> <p>월요일과 금요일 (오전 9:30 부터 오후 1:30) 그리고 수요일 (오후 1:30 부터 오후 5:30)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<b><a href="http://www.nylpi.org">www.nylpi.org</a></b></p>
--	---

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.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.